

## 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8 회계연도

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한 것은

1. 예산이용(	0 건)	0 원
(1) 일반회계는	0 건)	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0 건)	0 원
2. 예산전용(	2 건)	34,000,000 원
(1) 일반회계는	2 건)	34,000,00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0 건)	0 원
3. 예산이체(	82 건)	19,327,613,820 원
(1) 일반회계는	81 건)	18,424,843,82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1 건)	902,770,000 원 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